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6,518,613	14,895,558
일반회계		486,321,472	14,589,644
특별회계		10, 197, 141	305,914
	기타특별회계	10, 197, 141	305,914
	상수도특별회계	2,943,114	88,29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432,878	42,9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3,739	30,712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243,570	37,307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311,281	99,338
	주차장특별회계	196,500	5,8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6,059	1,382

- 제 2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83,176천원으로 한다.
-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